

13. 土地去來許可 · 申告區域 指定

資料提供：建設部

건설부는 경기도 안산시, 충남 여천군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(3년)이 만료된 4도 4시 13군 1,317.56km² 지역에 대하여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

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가상승우려로 새롭 요청한 경남 창원군 귀산면등 2도 4군 544.59km²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으로, 강원도 춘천군 사북면등 2도 1시 4군 798.83km²에 대하여는 신고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.

- 허가구역 재지정내용을 살펴보면

○ 금번 재지정대상 지역은 '89. 10. 4 서해안고속도로 및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3년의 기간으로 지정된 4도 4시 13군 1,317.56km²로서

○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

- 허가구역 지정당시의 개발사업등 지정사유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
- 대상지역이 한중수교등으로 개발기대심리가 잠재되어 있는 서해안 연안지역이며
- 해당 자치단체장도 투기발생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는 의견이어서

대상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

【재지정 지역】

경	기	시흥시 안산시 화성군	장하동 부곡동 반월면	월파동 비봉면	양상동 팔탄면	일 동	팔곡이동
충	남	대천시 당진군 단산군 홍성군 보령군 여천군	내항동 당진읍 운산면 갈산면 정소면 여천읍	궁촌동 해미면 은하면 주포면 비인면	 단교면 기산면	태천면	
전	북	김제시 옥주군 김제군 부안군 고창군	신곡동 대야면 성덕면 동진면 고창읍	서암동 나포면 죽산면 출포면 여덕면	갈공동 무장면	공음면	아산면
전	남	영광군 함평군 부안군	영광읍 함평읍 부안읍	 신광면 일로읍	엄다면		

—허가구역 및 신고구역 신규지정은

서해안 개발기대, 관광지개발, 고속국도 건설등으로 투기발생이 우려되어 자치단체장이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토지거래허가·신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

○허가구역 신규지정 대상지역은 2도 4군 544.59km²

전	남	부안군	부안읍	변산면	: 한중수교로 인한 개발기대와
			진서면	위도면	부안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
		완주군	소양면	운주면	
			구이면		
경	남	창원군	귀산면		: 수정만매립사업으로 택지조성
		산청군	신안면		: 진주-대전간 고속국도 건설 및 도시
					기본계획 수립

○신고구역 신규지정 대상지역은 2도 1시 4군 798.83km²임

강	원	도	춘천군	사북면	: 춘천호수 주변으로 자연경관수려
			평창군	봉평면	: 용도지역변경(산림보전지역→관광진흥 및 개발촉진지역)
			양구군	해안면	: 안보관광권 조성계획(평화의 댐 및 제4땅굴)
			인제군	단화면	: 북방정책관련 투기우려
전	남	나주시			: 광주직할시 주변지역으로 투기요인 상존

—금번 허가구역 재지정과 허가·신고구역 신규지정은 '92. 9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 거쳐 '92. 10. 2 지정하고

지정기간을 허가구역은 '92. 10. 4~'95. 8. 18까지 3년간, 신고구역은 '92. 10. 4~'97. 8. 18까지 5년으로 하며 앞으로도 건설부는 투기우려의 조짐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신속히 허가·신고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사전에 봉쇄해나갈 계획이다.

※ 허가구역 및 신고구역 면적

- 허가구역 : 45,633.03km² (전국의 46%) → 46,177.62 (46.5%)
- 신고구역 : 37,328.64km² (전국의 37.6%) → 37,736.60 (38.0%)